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1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 송재봉·김남근·서영교

민병덕 • 이강일 • 이훈기

박지혜 • 박해철 • 박지원

황정아 · 권향엽 · 임미애

박용갑 • 오세희 • 이성윤

김 윤 • 전진숙 • 정진욱

황명선 · 조계원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

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소상공인에 한정한다"를 "소상공인에 한정하며, 임차인의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개시일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 간"이라 한다)"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 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소상공인에 한정하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며, 임차인의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개시일에 따라 제한되지 아 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니한다-----2020년 1월 1일부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 ② 계약기간-----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 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	
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	
징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